

부산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모집 공고(안)

부산광역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존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부산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신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창조기업에 도전하는 많은 분의 입주 신청 바랍니다.

2018년 4월 24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모집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모집 공고 기간	2018. 4. 24(화) ~ 5. 8(화) 18:00까지 <15일간>	※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기간	2018. 4. 24(화) ~ 5. 8(화) 18:00까지	
입주심사	2018. 5. 10(목) (예정)	
합격자 발표	2018. 5. 14(월) (예정)	
오리엔테이션	2018. 5. 15(화) (예정)	
입주예정	2018. 5. 15(화) (예정)	

2. 신청대상: 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분야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조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창업넷(www.k-startup.go.kr)의 정회원인 자

“1인 창조기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함.

신청 자격사항(필수사항)

- 상기와 같은 1인 창조기업의 대상자이어야 하며,
- 정보통신, 콘텐츠, 지식서비스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 보유자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한 자로
- 예비 1인 창조기업가(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초기 1인 창조기업가

※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 434개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함

(대상 업종 확인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정보통신, 콘텐츠, 지식서비스 분야 기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 2조 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2조 1호, 산업발전법 제 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 에 따름

(반드시 상기 첨부파일 중 공고문의 참고 1~2에서 대상업종 확인)

신청 제외대상

- 정보통신, 콘텐츠, 지식서비스 분야 관련성이 없는 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 중인 전국의 전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간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 인 자
- 타 1인 창조기업센터 또는 창업보육센터에서 강제퇴거된 자
- 1인 창조기업 및 기타 창업관련 지원 수혜중인자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중인자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기타 정부사업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개인 및 기업
- 기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시설현황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2층 203호 부산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기본시설 : 사무가구, 인터넷, 공용사무기기, 회의실

4. 입주모집 : 6개 기업 내외 (1인실: 6개)

1인실 : 실당 5.88m² 내외

입주기간 : 약 7.5개월(2018.5.15. ~ 2018.12.31)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3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 필수

5. 입주기업 지원사항

-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등 비즈니스 공간 무상 지원
-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무료 지원
- 창업교육 및 창업정보 제공
- 경영, 법률, 세무, 특허 등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정부 공모사업 프로젝트 코디네이팅 등

6. 입주기업 선정방법 및 합격기준

- 심사(서류) : 사업계획서 평가
- 종합평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의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동점자 발생시 아래 가점 적용 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평가결과 및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7. 입주기업 선정기준

- 평가기준

점수 배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점 기준	5	4	3	2	1
배점 7점 기준	7	6	5	4	3
배점 8점 기준	8	6	4	2	1
배점 10점 기준	10	8	6	4	2

- 평가항목

- 창업자의 역량(20점) : 창업자의 전문성, 창업자의 사업주인 의지 및 열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기술(제품)의 차별성
- 기술성(20점) :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기술구현의 현실성
- 시장성(15점)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 고용 및 수출잠재성(15점) :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가능성
- 기타(10점)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8. 입주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입주신청서 배부 : 홈페이지(www.busanit.or.kr)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24(화) ~ 2018. 5. 8(화) 18:00까지
 - 접수처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2층 203호 부산창조기업지원센터 사무실

○ 문 의

- 부산창조기업지원센터 배재식 매니저, 김미주 선임

Tel. 051-749-9488-9, E-mail. manager@busanit.or.kr, kmj85@busanit.or.kr

□ 접수방법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메일 및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 미비된 제출서류는 접수 받지 않음

※ 신청서 허위 기재 시 자동탈락 및 선정 취소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필수

9.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원본) 3부

□ 사업계획서 3부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2인 좌석 신청일 경우 팀원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2인 좌석 신청일 경우 팀원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프리랜서 활동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3부(*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증빙 서류 각 3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제출은 무효 처리됨

※ 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만 최대 3점까지 가점 인정

○ 가점 적용 내용(최대 3점까지 인정함)

- 사업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건은 제외)(1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시행대
회 및 안행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1점)
- 만 39세 미만 청년 (예비)1인 창조기업(1점)
-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예비)1인 창조기업(1점)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1점)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에 한해 지원내용
등 입주설명회 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입주

□ 신청서 허위 기재 시 자동탈락 및 선정 취소

[참고 1] 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인 창조기업 범위

□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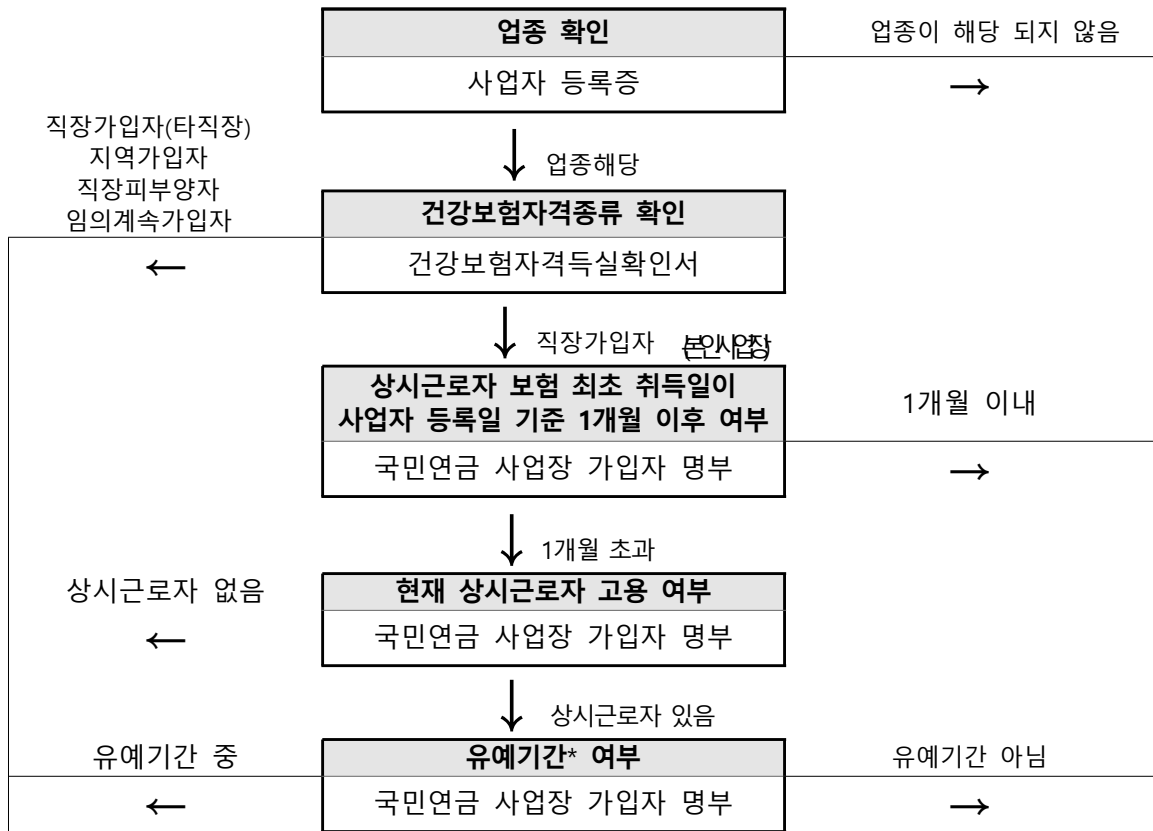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 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

[참고 2]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 ◆ **상시근로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 **유예기간**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유예기간 판단 참고

1. **유예기간** :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2.5.1일 창업, '12.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2.7.1~'15.12.31까지임
2. **유예기간 종료 후** :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
 (예시) '12.5.1일 창업, '12.7.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 유예기간은 '12.7.1~'15.12.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 다만, '16.3.1~'16.3.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 '16.4.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 재유예기간은 '16.4.1~'19.12.31까지임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님

정보통신, 콘텐츠, 지식서비스 산업 기준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015호, 2015.1.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2015.6.22>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7호, 2016.3.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2016.3.29>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6.12.2.] [대통령령 제27636호, 2016.11.29, 타법개정]

[별표 2] <개정 2013.8.6>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제3조제1항 관련)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